

##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설립목적)**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산·학·연·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경운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,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교내 창업교육 및 산학협력 관련 학생취업 지원활동
7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8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9.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·기자재·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
10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대학 내에 설치·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
11.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12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**제4조의2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**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본 대학교 내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지원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**제5조(이사)**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, 단장이 이사가 된다.

**제6조(단장 및 부단장)** ① 단장 및 부단장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총괄하며,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,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감사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.

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.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**제9조(권한의 위임)** ① 단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객원교수 등의 채용)**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협력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사업, 사업단센터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운영에 필요할 경우 겸임교원, 연구초빙교수, 산학협력 초빙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원,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기간, 보수,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

② 단장은 겸임교원, 연구초빙교수, 산학협력 초빙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원,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 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비밀유지의무)**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보상금

제12조(보상금의 지급)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#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13조(기본재산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

- 1. 출연재산
- 2. 증여재산
- 3.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-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
제14조(운영재원)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제15조(수입)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- 2.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
- 3.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- 4.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- 5.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
- 6.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- 7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- 8. 이자수입 및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
제16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- 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- 2.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- 3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- 4. 학교기업의 운영비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
- 5.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- 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
- 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
- 8.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

9.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

**제17조(재산관리의 제한)**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4.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

**제18조(회계원칙)**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, 산촉법 상에 나열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(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)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9조(회계연도)**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0조(정관의 변경)**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0조의2(규정류의 변경)**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, 규칙, 기준 등의 규정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

**제21조(해산)**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**제22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
**제23조(시행세칙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24조(공고 사항 및 방법)**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학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